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03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29.

발 의 자 : 김용만 · 강준현 · 최민희  
천준호 · 염태영 · 박상혁  
이인영 · 신영대 · 이정문  
임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구조의 단순·투명화 및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, 2023년 9월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총 수가 172개에 이르고, 82개 대기업집단 중 42개는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체계로 선택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지주회사로 하여금 사업연도 종료 후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재무현황 등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, 해당 보고서는 공시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하고 별도 법인으로 상장시키는 이중상장으로 인하여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고 그 밖의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됨.

따라서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이중상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,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관한 재무현황, 지배구조,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, 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,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그 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).

##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·자회사·손자회사 및 증손회사(이하 “지주회사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1. 명칭, 설립일(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을 포함한다), 사업 내용 및 임원 등 일반 현황
2. 재무현황
3. 주주 및 주식소유 현황
4. 상장법인 여부 및 상장법인인 경우 특정 주주와 다른 주주간의 이해상충 방지 방안
5. 지주회사등 간의 거래 관계
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⑧ 지주회사가 「상법」 제542조의7제2항, 제542조의8제1항 단서,

제542조의9제3항,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3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그 자회사·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회사·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고서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) ① ~ ⑥ (생략)</p> <p>⑦ <u>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·자회사·손자회사 및 증손회사(이하 “지주회사등”이라 한다)의 주식소유 현황·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8조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·자회사·손자회사 및 증손회사(이하 “지주회사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명칭, 설립일(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을 포함한다), 사업내용 및 임원 등 일반 현황</u></li> <li>2. <u>재무현황</u></li> <li>3. <u>주주 및 주식소유 현황</u></li> <li>4. <u>상장법인 여부 및 상장법인인 경우 특정 주주와 다른 주주간의 이해상충 방지 방안</u></li> <li>5. <u>지주회사등 간의 거래 관계</u></li> <li>6. <u>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</u></li> </ol>

<신 설>

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⑧ 지주회사가 「상법」 제542조의7제2항, 제542조의8제1항 단서, 제542조의9제3항,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3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그 자회사·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회사·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.